

부산직할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물품”으로, 동조 제3항중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11조의 2중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중 “3백만원 이상인 물품”을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를 “정수물품에”로 하고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급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현행과 같음) ② 물품(.....)..... ③ 분임물품출납원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영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u>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u> 으로 한다.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정수 물품으로 한다.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③(생략)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u>3백만원 이상인 물품</u> 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⑧(생략)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③(현행과 같음) ④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 ⑤-⑧(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생략)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생략)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생략)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생략)
② 분입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 이력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2의 규정에 의한 <u>중요물품</u> 및 <u>정수물품</u> 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② 정수물품에 정수물품	② 정수물품에 정수물품	② 정수물품에 정수물품
③-④(생략)	③-④(생략)	③-④(생략)	③-④(생략)